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
일부개정령(안)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학생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시간제수업의 정원 및 수강 자격 등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, 고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시간제 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도록 함(안 제86조의2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3) 행정규제 : 심사예정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
초·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 중 “교육부장관”을 “국가교육위원회”로 한다.

제8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6조의2(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) ①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.
② 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4조(교육과정) 각종학교의 교육과정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<u>교육부장관</u> 및 <u>교육감이</u>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각종학교의 교육 정도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.	제84조(교육과정) ----- ----- -- <u>국가교육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제86조의2 (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운영 등) ① <u>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시간제수업의 수업당 정원 및 수강자격 등을 학칙으로 정한다.</u> ② <u>고등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이 제1항에 따른 각종학교에서 시간제수업을 이수한 경우 그에 대한 학점을 인정한다.</u>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교육과정지원팀	
연 락 처	(044) 203 - 6720